

●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3-872호

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10조의3제2항에 따라 「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연간 구매목표」를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3년 12월 12일

산업통상자원부장관

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연간 구매목표 고시안 행정예고

1. 개정이유

「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10조의3제2항에 따른 2024년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연간 구매목표 설정

2. 주요내용

가. 2023년도 동일하게 2024년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연간 구매목표 고시

3. 의견제출

이 개정(안)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2월 3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(<http://opinion.lawmaking.go.kr>)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·반 여부와 그 이유)

나. 성명(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), 주소, 전화번호

다. 그 밖의 참고사항 등

※ 제출의견 보내실 곳

－ 일반우편 :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402 정부세종청사 13동 자동차과

－ 전자우편 : pch1126@korea.kr

－ 팩 스 : 044-203-4731

4. 그 밖의 사항

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(www.motie.go.kr, 법령·정책>환경법령>입법·행정예고)를 참조하시거나 자동차과(전화 044-203-4329)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